

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급결정 통지서

사업장 (수탁훈련기관)	사업장관리번호									
	명칭					대표자				
	소재지					(전화번호:)				
지원신청액										
지급결정액 세부 명세 (사업주용)	훈련 기관명	훈련 과정명 (코드번호)	훈련기간	지원금 내역						
				지원 인원	지원금 총액	훈련비	임금	숙식비	훈련 수당	
계										
지급결정액 세부 명세 (수탁훈련기관용)	사업주명 (사업장 관리번호)	훈련 과정명 (코드번호)	훈련기간	지원금 내역						
				지원 인원	지원금 총액	훈련비	임금	숙식비	훈련 수당	
계										

미지급(일부지급)사유

「고용보험법 시행규칙」 제60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결정을
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
년 월 일

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(○○지역본부·지사) 직인

안내사항

1. 위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2. 제1호의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 없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담당자() 전화번호() FAX번호()